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안 준 호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3. 청구취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4. 청구이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음.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조례임.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임.

5.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총 20,990명 (전자서명 822명 포함)

6.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각 시·군 [붙임1] 참조

7.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 [붙임2] 작성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충청남도의회 방문, 우편, 팩스(041-635-5283)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편번호) 32416, **우편 접수는 3.22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8.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041-635-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구 분	열 램 장 소	비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자치민원과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보령시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자치행정과	
아산시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서산시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논산시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계룡시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당진시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붙임 2]

■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